

2022

04

통권 464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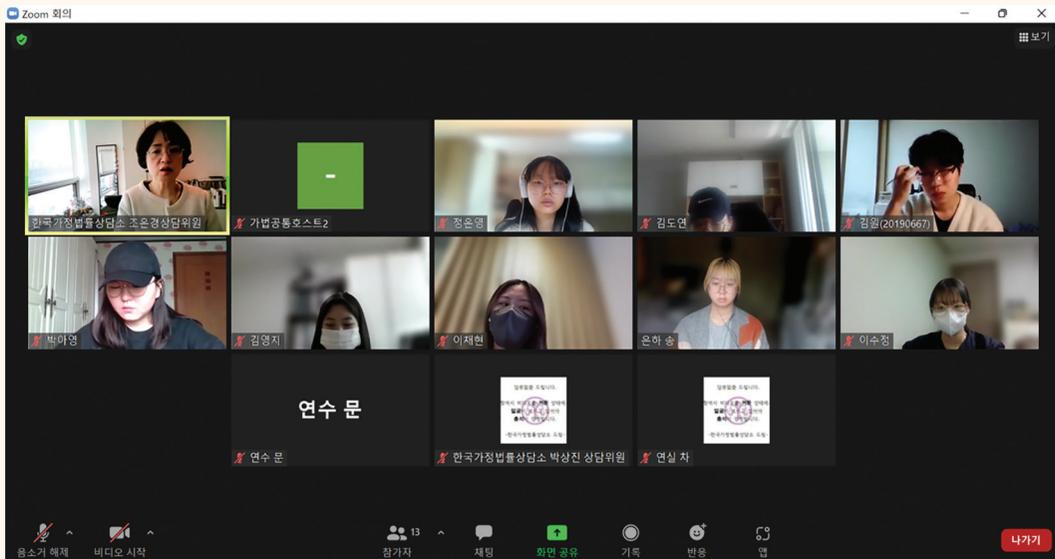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상담소는 3월 24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월 24일 정기 전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그리고 신임 이사 선출 및 감사 유임에 대해 인준하였다. (관련 내용 33면)



상담소의 2022년 상반기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봉사자 대상 교육이 20명의 대학생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3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내용 33면)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2021년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분석
- 15 · 특집 ❷ | 2021 다문화가정 영어법률상담 통계
- 16 · 기획연재
- 18 · 가정폭력상담실
- 20 · 어떻게 할까요
- 24 · 결혼과 인생(225) 영화 이야기
 메이의 새빨간 비밀 _ 김용언
- 26 · 좋은 책
 19세기 히스토리
- 27 · 실습소감문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옥인동 꽃집 수선화>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저는 지금 상담소에서 서강대교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인도에 간이 울타리가 설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절정을 이룰 벚꽃을 보기 위해 여의도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의도 벚꽃길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부분적으로 개방될 모양입니다. 이 벚꽃길 개방행사도 <가정상담>을 받아 보실 즈음에는 과거형이 될 것입니다만 2020년 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행사를 시작한 지 16년 만에 전면 취소된 이후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열리는 벚꽃길이기에 반가운 마음입니다. 올해도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식적인 ‘여의도 봄꽃축제’는 개최되지 않지만 부분 개방이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일상의 회복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계절이 오가고 우리 역사도 새롭게 써집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이고 국민의 삶을 좌우할 것이기에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하여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7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정, 가족구성원과 함께 하며 여성문제, 가족 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과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온 상담소로서는 무엇보다 가족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 당국을 주시하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이기에 상담소가 새 정부의 가족과 여성 정책에 무엇보다 기대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②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③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④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⑤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⑥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⑦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⑧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⑨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⑩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순입니다.

10대 공약을 보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10대 공약 어디에도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다루겠다는 정책은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혹 여섯 번째 공약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한국 사회 여성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여 내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 아마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적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당선인은 청년을 위한 공약을 따로 모아 7순위에 올렸는데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하고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 관련 공약은 임신·출산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공약집 여섯 번째에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대신하여 인구가족부, 미래가족부 등의 부처 이름이 들먹여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출범과 역사를 돌아보며 과연 여성가족부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는가, 여성과 관련된 것은 임신과 출산, 양육이 전부인가, 가족과 관련한 것이 출생률 관련 인구 문제가 전부인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현실에서는 성급한 판단은 보류하고 모든 정책이 그리 해야겠지만 특히 가족 정책은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있게 통찰하여 중장단기 정책을 적절하게 세워 백년대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여성’ 대신 인구나 미래와 같은 수식어는 적절한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사회와 국가 입장에서 ‘가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 변화 등을 제대로 짚어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려면 그리하여 모든 가족구성원이 태어나 무덤으로 갈 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의 사명과 역할을 어찌해야 하는지 등이 가족과 여성정책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 또는 대체 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부문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급격한 사회상의 변화 앞에 흔들리는 우리 사회의 가정과 그 구성원인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곧 국가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새 정부가 올바른 방향에서, 제대로 된 걸음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정비 이루어지고 있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에서 형사처벌까지

- 과거양육비 인정, 청구금액의 50%에도 못 미쳐
- 성년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 비율 높아
- 감치 결정 과정에서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 보여
- 번거로운 소송 절차에 따른 양육비 공백 발생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의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서울가정법원은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다.

이러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와 사회·경제적인 사정 등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마련으로 양육비 이행 및 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되고 있으나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일은 한부모가족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수많은 상담을 통하여 한부모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

급받지 못하면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아울러 본소는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특화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2015년부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서비스 수탁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사업에서도 성년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1년 신청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총 100건을 분석하였다.

I.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의 특징

1. 가족형태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은 대부분 한부모가족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비혼모가족, 비혼부가족, 조손가족 등을 포괄한다. 2021년의 경우 모자가족이 6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19%, 비혼모가족이 14%를 차지했다. 비혼부가족도 1건 있었다.

〈표 1〉 가족 형태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모자가족	66	66
부자가족	19	19
비혼모가족	14	14
비혼부가족	1	1
조손가족	-	-
합계	100	100

2. 연령 및 지역

1)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과 상대방의 연령은 40대(신청인 44%, 상대방 45%)가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30대(신청인 25%, 상대방 21%)와 50대(신청인 22%, 29%)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20대(신청인 7%, 상대방 4%)와 60대(신청인 2%, 상대방 1%)가 그 뒤를 이었다.

〈표 2〉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구분	사건 수	비율
	신청인	20대	7		7	상대방	20대
30대		25	25	30대	21		21
40대		44	44	40대	45		45
50대		22	22	50대	29		29
60대		2	2	60대	1		1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2) 자녀 연령

자녀의 연령은 자녀들이 8~13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42명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의 비중이 높았고, 과거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성년자녀 또한 38명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3〉 자녀 연령 분포

(단위 : 명)

구분	자녀 1	자녀 2	자녀3	자녀4
0-3세	5	-	-	-
4-7세	17	7	1	-
8-13세	28	11	3	-
14-16세	14	6	-	-
17-19세	13	2	1	-
20세 이상	23	12	2	1

3) 지역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1건, 경기 34건, 경상 13건, 충청, 전라 각 9건으로 수도권 지역이 6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 지역별 소송구조 건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서울	31	31
경기	34	34
강원	4	4
충청	9	9
경상	13	13
전라	9	9
제주	-	-
전체	100	100

II.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양육비 소송구조는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2021년 양육비 청구 사건은 40건,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60건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100건 중 66건의 사건이 종결되었고(양육비 청구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45건) 34건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승소·조정·결정 51건, 취하 6건, 기각 6건, 각하 2건, 이송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소의 양육비 소송구조는 본안 소송의 지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절차인 본안 외 소송을 차례로 지원함으로써 소송의 실효성과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표 5〉 소송구조 사건 현황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양육비 청구	종결	승소·조정	15	37.5
		기각	1	2.5
		각하	1	2.5
		이송	1	2.5
		취하	3	7.5
	진행 중	19	47.5	
합계		40	100	

구분		사건 수	비율	
양육비 이행확보	종결	결정	36	60
		기각	5	8.3
		각하	1	1.7
		이송	-	0
		취하	3	5
	진행 중	15	25	
합계		60	100	

1. 양육비 청구 사건

1) 개요

양육비 청구는 2021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100건 중 40건(40%)을 차지했다. 2020년 151건 중 28건(18.5%)이었던 것에서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비양육자가 제기한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한 응소 사건 및 양육비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 등의 증가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족 형태 및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2021년 진행된 40건의 양육비 청구 사건은 양육비 청구(친권자 변경, 양육비 변경, 응소 등 포함) 33건, 인지 및 양육비 청구 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가족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가족 형태별 본안 소송 건수

(단위 : 건)

구분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조손 가족
인지 및 양육비 청구	-	-	7	-	-
양육비 청구	24	7	1	1	-

또한 청구 유형에 따라 당사자 간 관계를 살펴보니 협의 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양육비 청구 형태 및 인정 금액

된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것이었다.

40건의 사건 중 자녀의 장래양육비만을 청구한 것은 21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것은 8건이었다. 과거양육비만을 청구한 11건 중 10건은 이미 성년이

전체 40건의 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21건으로 승소·조정 의 결과를 낸 15건의 양육비 청구 금액과 판결(조정) 금액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당사자 관계별 청구 내용

(단위 : 건)

청구 유형/당사자 관계	비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전체
인지	7	-	-	7
친권자 변경	1	2	-	3
양육비	1	17	6	24
양육비 증액	-	3	-	3
양육비 감액 응소	-	1	2	3
합계	9	23	8	40

〈표 8〉 양육비 청구 형태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장래양육비 청구	21	9	12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8	5	3
과거양육비 청구	11	7	4
합계	40	21	19

〈표 9〉 양육비 청구 및 인정 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장래청구금액	장래인정금액	과거청구금액	과거인정금액
장래양육비 청구	100	100	-	-
	100	50 ¹⁾	-	-
	60	50	-	-
	50	40	-	-
	90	70	-	-
	80	30	-	-
	60	40	-	-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100	120	15,040	0 ²⁾
	60	70	2,900	0
	50	0	10,630	4,320
과거양육비 청구	-	-	8,650	8,480
	-	-	6,700	2,000
	-	-	2,060	1,200
	-	-	12,390	1,800
	-	-	3,080	3,000

1) 만 20세까지 지급

2)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장래양육비는 10건 중 청구금액의 5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상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의 경우에는 8건 중 3건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4) 소송기간

양육비 청구 사건의 소송기간은 1~3개월 8건, 3~6개월 5건, 6개월~9개월은 6건, 9개월~1년은 2건으로 나타났다.

< 사례 1 >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적절한 인정 범위는?

청구인(여, 49세)과 상대방(남, 56세)은 2002년 협의이혼하였고, 당시 상대방은 외도로 집을 나간 지 오래된 상황이었다. 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정한 바가 없었고, 청구인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다. 당시에는 생활에 치여 양육비를 청구해 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청구인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02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인 2013년까지 134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의 양육비, 총 6,7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2,000만원만 인정되었다. 법원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³⁾을 참조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정된 금액은 134개월 동안 매월 1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2.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1) 개요

양육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2021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100건 중 60건이었다. 2021년 진행된 60건의 사건을 가족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모자가족의 신청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자가족 12건, 비혼모가족 6건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족 형태별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 건수

(단위 : 건)

구분	모자 가족	부자 가족	비혼모 가족	비혼부 가족	조손 가족
전체	42	12	6	-	-

3)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미지급 양육비 액수

소송구조 신청 당시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의 액수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22건(36.7%)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구간 11건(18.3%),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구간 9건(15%),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8건(13.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건(11.7%), 300만원 미만 2건(3.3%), 10,000만원 이상 1건(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양육비가 1,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4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미지급 양육비 액수

(단위 : 건, %)

구분	사건 수	비율
300만원 미만	2	3.3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	11.7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	15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2	36.7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1	18.3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	8	13.3
10,000만원 이상	1	1.7
합계	60	100

3) 이행확보 유형별 사건 내용⁴⁾

(1)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가) 사건 현황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

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또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신청된 34건을 살펴보면 이행명령은 25건, 과태료 1건, 감치 8건이 신청되었고, 이중 이행명령 17건, 과태료 1건, 감치 6건이 종결되었다.

〈표 12〉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이행명령	25	17	8
과태료	1	1	-
감치	8	6	2
합계	34	24	10

(나) 결과 및 소송기간

종결된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명령 신청은 25건 중 17건이 종결되었다. 그 중 15건이 결정을 받았고 취하 2건으로 나타났다. 취하된 2건의 사건은 모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비양육자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였다. 감치 신청은 6건 중 4건이 기각되었고 2건만 감치 결정을 받았다. 과태료 신청 사건 1건은 700만원의 결정을 받았으나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표 13〉 감치 종결사건 내용

구분	종결 내용
감치 신청	감치 10일 결정
	기각 (상대방 경제 상황)
	감치 15일 결정
	기각 (상대방 경제 상황)
	기각 (양육비 지급)
	기각 (상대방 연령 및 건강상태)

4)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은 전체 60건 중 이행명령 25건, 과태료 1건, 감치 8건, 직접지급명령 3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9건, 유체동산 강제경매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각 1건, 재산명시 6건, 재산조회 1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건이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송기간을 살펴보면 이행명령 사건의 경우 1~3개월 3건, 3~6개월 7건, 6~9개월 5건, 9~12개월 2건이었고, 감치와 과태료 신청 사건은 1~3개월 1건, 3~6개월 6건이었다.

건은 4개월 내 전부 종결되었다.

〈표 14〉 직접지급명령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직접지급명령	3	3	-

< 사례 2 >

감치가 인정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는?

신청인(남, 38세)과 피신청인(여, 38세)은 2016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고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피신청인은 2017년 10월부터 2명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월 75만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피신청인은 금액과 날짜가 불규칙적이긴 했지만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여 오다가 16개월 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미지급 양육비 1,200만원 중 400만원을 10개월 간 매월 40만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감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1번의 심문 절차가 있었는데 당시 피신청인은 소득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없었다. 위 사건은 특별항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현황 및 결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강제집행 중 가장 잘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 2021년 신청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총 9건으로 압류 대상을 살펴보면 급여채권 4건, 예금채권 4건, 보험금채권 1건이었다. 신청된 9건의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종결된 사건은 모두 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졌다. 유체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1건이 신청되었으며 경매절차를 통하여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었다.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심이 진행되지 못하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일부 지급받은 사건도 1건 존재했다.

(2) 강제집행 등

(가) 직접지급명령 현황 및 결과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021년 직접지급명령은 3건 신청되었고, 모두 종결되었다. 1건은 기각되었는데 채무자의 직장정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해당 3

〈표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재산명시	6	2	4
재산조회	1	1	-

< 사례 3 >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디까지?

채권자(여, 45세)와 채무자(남, 46세)는 2017년 재판상

이혼하였고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다. 또한 채무자는 양육비로 2015년 8월부터 매월 말일에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으나 채무자가 재직하고 있던 다단계회사는 채무자의 코드만 있을 뿐 활동을 하지 않아 지급할 수 있는 급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다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차례로 진행하였고,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던 여러 계좌에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예금 액수가 모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계좌에 추심이 어렵게 되자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현황 및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다. 재산명시는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절차에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양육비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법원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이다. 2021년 소송구조 사건 중 재산명시 6건, 재산조회 1건이 신청되었고, 3건이 종결되었다.

〈표 16〉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재산명시	6	2	4
재산조회	1	1	-

(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현황 및 결과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소송구조 사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2021년 소송구조 사건 중 5건이 신청, 4건이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이다.

〈표 1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송구조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체	종결	진행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5	4	1

III. 소결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양육자는 생활 자체로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비양육자가 본인의 양육비 미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해 양육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다. 2021년 본소에서 양육비 소송구조를 진행한 사건 가운데 비양육자가 이를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는 양육비 감액 청구뿐만 아니라 면접교섭 이행명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등이 있었다. 물론 면접교섭 이행명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전부 기각되었다. 양육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비양육자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며 소송구조 진행 중 드러난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청구하더라도 대부분 그 금액이 대폭 감액되어 결정되었다. 과거양육비는 여전히 비양육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상대방의 경제적인 사정만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법

원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장래양육비 청구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권리이며, 특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양육자의 경우 그만큼의 경제적 고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금액 그대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2008년 이전에 이혼을 경험한 양육자들은 제도의 미비로 양육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현시점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여러 매체에서는 이들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송구조를 원하는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를 제대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고 법원은 지급보다 세심하게 과거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치 결정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행명령에서 결정되는 금액은 미지급된 양육비의 전부인 경우보다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해 이행명령 분할기간 및 금액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과태료나 감치를 명하기에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서 결정문에도 명시된다. 또한 이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원은 심문기일 등을 통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형편 등을 파악하여 이행명령 결정에서 지급 기간 및 금액을 반영할 것이다. 그렇게 정해진 금액은 정기적 지급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수단은 감치 결정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염두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감치 결정 자체는 지금까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었다. 결국 양육비 채권자가 감치까지 신청하게 되는 이유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다. 2021년 진행된 감치 사건 6건 중 기각된 사건은 4건이었는데, 이중 3건은 이행명령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양육비 채무자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이었다. 소송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을 좀 더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켜 본 후 해당 결정을 내리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양육비 채권자들은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해당 절차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감치를 결정하는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문절차를 두고 그에 대한 진술 및 입증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행명령과 감치는 공시송달의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절차들의 공시송달에 따른 효력 인정 문제 및 송달 방법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서 서술한 내용처럼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 절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절차를 두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절차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양육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예금이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나 제3채무자인 여러 은행에서 예금 잔액이 남아 있지만 185만원²⁾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양육비 채무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절차의 번거로움과 양육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비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비채권을 일반채권보다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명령부터 감치 신청까지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행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감치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백 없이 이행되어야만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논의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강제이행조치 등의 도입을 통하여 양육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혜경 상담위원

5)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다문화가정을 위한 2021 영어법률상담 - 사이버상담 통계

2021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법률상담은 2020년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이버상담으로 진행되었다. 상담건수는 2020년보다 2배나 증가하였다(16건 → 33건). 사이버상담의 특성 때문인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상담도 많았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상담 내용은 이혼-양육비-친권-양육권의 순으로 많았다.

2021년에 진행된 영어법률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일	신청인		상대방		사건분류
		성별	국적	성별	국적	
1	1. 13.	여	한국	남	미국	가사/재산분할
2	2. 10.	남	캐나다	여	한국	가사/이혼/내담자1호
3	2. 10.	남	캐나다	여	한국	가사/이혼/내담자1호
4	2. 16.	남	캐나다	여	한국	가사/이혼/내담자1호
5	2. 18.	남	캐나다	여	한국	가사/이혼/내담자1호
6	3. 8.	여	중국	미상	한국	가사/미성년후견
7	3. 8.	여	미국	미상	미상	가사/입양
8	3. 17.	남	포르투갈	미상	미상	가사/입양
9	3. 19.	여	미상	남	미상	가사/부부갈등/3호
10	3. 23.	여	미상	남	미상	가사/부부갈등/3호
11	4. 22.	여	일본	남	한국	가사/양육비
12	4. 26.	여	일본	남	한국	가사/양육비
13	4. 26.	여	일본	남	한국	가사/양육비
14	5. 4.	여	일본	남	한국	가사/양육비
15	5. 6.	여	일본	남	한국	가사/양육비
16	5. 7.	여	일본	남	한국	가사/양육비
17	5. 11.	여	일본	남	한국	가사/양육비
18	5. 17.	여	한국	남	미국	가사/재산분할
19	5. 31.	남	프랑스	여	한국	가사/이혼/6호/성격차이
20	6. 2.	남	프랑스	여	미국	가사/기타
21	6. 7.	남	프랑스	여	한국	가사/이혼/6호/성격차이
22	6. 9.	남	프랑스	여	미국	가사/기타
23	6. 29.	남	필리핀	미상	미상	민사/채권채무
24	6. 29.	여	체코	남	한국	가사/인지
25	6. 30.	여	체코	남	한국	가사/인지
26	7. 2.	여	체코	남	한국	가사/인지
27	8. 17.	남	프랑스	여	한국	가사/이혼/6호/성격차이
28	11. 15.	여	영국	남	한국	가사/친권-양육권
29	12. 1.	남	미상	여	미상	가사/친권-양육권
30	12. 8.	남	미상	여	미상	가사/친권-양육권
31	12. 10.	남	미상	여	미상	가사/친권-양육권
32	12. 28.	여	한국	-	-	가사/상속
33	12. 30.	여	베네수엘라	남	한국	가사/이혼/3호

가정폭력상담 전문 기관으로 (1)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8월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집안 일,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일, 가장이 그럴 수도 있는 일, 조용히 있으면 될 일로 치부되면서 가정 내 약자들을 때로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던 가정폭력을 마침내 공권력의 영역으로 끌어내게 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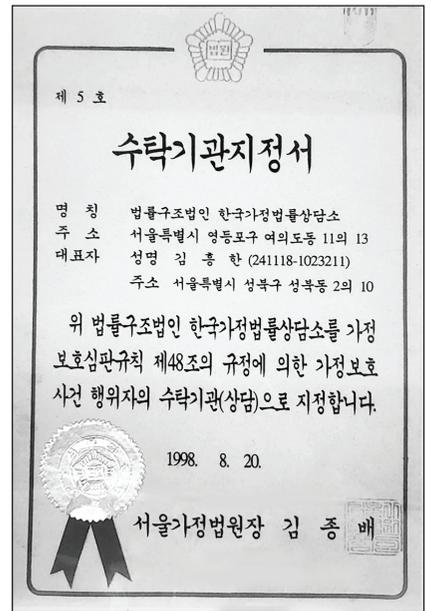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근 50여 년간 끊임없이 대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매 맞는 아내’로 대표되었으며, 부부갈등의 한 겹 아래를 들여다보면 거의 여지 없이 남성들의 외도와 폭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법이 외면한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길 없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상담소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그 결과 마침내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을 이끌어 냈으며,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가정폭력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오며 가정폭력 상담에 관해 언제나 준비된 상태였던 상

담소는 법의 시행을 앞두고 차분한 준비를 계속해 가고 있었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당시 광배희 부소장은 <가정상담> 4월호의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상담소의 각오를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면 언제

나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왔습니다. 폭력은 힘 있는 자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이고 또 폭력을 당하는 자에게는 신체적 위해만큼이나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의식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가정폭력은 폭력이 저질러지는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장소가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인 가정이기 때문에 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가장인 남성에게 의해 저질러지며 그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략)

지난해 11월 상담소를 비롯한 범여성계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하나의 힘든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그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올해 7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 내 폭력을 더 이상 숨겨두거나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의식의 확산으로 얻어낸 소중한 법입니다. (중략)

상담소는 단순히 폭력은 범죄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인권 차원에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올 한 해 여러 가정문제 해결에도 주안점을 두겠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이 원래의 의도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던 상담소는 법의 시행과 더불어 7월 23일 ‘가정폭력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률 전반을 자세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보완점 등을 짚어 보았다.

편집부



▲1998년 7월 23일 열린 가정폭력특별법 토론회



▲ 창립40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 9월 11일에 가정폭력 관련 심포지엄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을 개최하였다.



나는 조연인데 상대방에게는 잔소리,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해

2019버2*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5회 등 15회

상담기간

2020. 5. 1. ~ 2020. 11. 1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6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3세)가 있다. 부부 모두 조선족이고 2013년에 한국에 온 행위자는 한국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행위자는 2019년 9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를 내며 식칼을 휘두르고 협박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부부갈등 및 사건 발생 원인으로 행위자는 피해자의 무시와 의심, 아이 돌봄과 가사 분담의 부담 등을, 피해자는 행위자의 의식과 태도를 문제로 꼽았다. 서로에게 바라는 바로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믿어주기를,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을 쓰지 않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꼽았다.

부부는 함께 상담에 임하면서 비폭력대화법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보였으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게 되었다. 중간점검 결과,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행위자는 적극적으로 가사에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상담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상담이 일시 중지된 기간에는 전화상담을 진행하였고, 대면상담이 재개된 이후 부부는 다시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종결상담 시 점검 결과, 부부는 상담기간 동안 다투지 않았으며 행위자의 폭력도 재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을 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는데 그러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행위자가 가사에 적극 참여하는 점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행위자는 향후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지 않고 가사에 더 열심히 참여할 것이며, 아버지로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을 다짐하였다.

2019버3*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5회 등 9회 상담

상담기간

2020. 5. 4. ~ 2020. 12. 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아내)는 결혼한 지 37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2녀 1남이 있다. 행위자는 2019년 11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사건 발생원인은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어 행위자는 재건축을, 피해자는 리모델링을 하자고 주장하며 충돌한 것였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집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구하여 나가 살고, 행위자는 등산, 자전거타기 등으로 소일하며 매일 1~2명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행위자는 음주 문제와 폭언 등 갈등요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는 살림 잘하고, 음식 솜씨 좋고 아이들도 잘 키운 아내인데 고집은 좀 센 아내였다. 피해자는 별거 후 2달 동안 집에 오지 않다가 2020년 4월부터 집에 오며 행위자에게 식사도 챙겨주는 등 행위자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하였다. 또한 행위자의 의견대로 집을 재건축하자고 하며 11월부터는 부부가 함께 댄스 연습장에 다니기로 합의하는 등 부부관계가 많이 개선되었다.

종결상담 시 확인 결과, 부부는 아직 별거 중이지만 피해자가 집에 다니러 오고 댄스 연습장에도 부부가 같이 다니고 있다. 다만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는 이견이 있어 피해자 관점에서의 전환과 비폭력대화법을 강조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으로 행위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있으며, 2021년 2월에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기로 하였고, 행위자는 향후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와 잘 지내려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0버6** 재물손괴/ 2020버8** 폭행(병합)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6회,
집단상담(비대면) 1회 등 10회

상담기간

2020. 6. 11. ~ 2020. 12. 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1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전혼 문제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 행위자는 2020년 2월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공동소유인 TV와 액자 등을 던져 손괴하였고, 이보다 하루 전에는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폭행을 하여 6개월 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그리고 초상담 시 확인 결과, 최근 행위자의 늦은 귀가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처부모가 중재하여 행위자가 밤 12시 이전에 귀가하고 모임 시간도 5시간 정도에서 3~4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실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는 상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지방으로 이사한다며 그 지역의 상담소로 연계해주시기를 바랐다. 담당 사건 조사관과 의논한 결과 본소에서 행위자의 상담을 진행하고 종결하기로 하였고, 행위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부부는 서로의 차이와 갈등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였고, 행위자는 이혼을 담당하게 받아들였다. 행위자에게 향후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폭력재발 시 법적 제재에 대하여 강조하며 상담을 종결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어떻게 할까요?



이 혼 4

●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 방법

Q 문 9 | 남편이 외국에 간 지 6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으면 아이와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3년쯤 된 후부터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 할 수 있나요?

A 귀하가 한국에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십시오. 남편은 그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보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

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된 후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귀하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남편 거주지 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 방법

Q 문 10 | 남편은 중국에, 저는 미국에 각각 거주 중이라 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인 부부 중 1명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결정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보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진술요지서)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3항, 제4항). 그 서류를 송부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이혼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이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그 배우자



가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하게 됩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제76조 제3항).

법원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이혼의사를 재외공관장이 보낸 진술요지서 및 회보서에 의하여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서 등본을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

●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려면**

Q 문 11 | 남편이 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서로 이혼에 합의는 되었는데 남편과 협의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협의상 이혼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부부 중 일방이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으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규칙 제73조 제2항).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어서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때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일방인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따라서 귀하는 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Q 문 12 | 부부싸움 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찾기에 법원에 같이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이혼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남편과 같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할 마음이 없으면 남편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확인서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동규칙 제80조 제2항).

●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Q 문 13 |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인한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살다가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 후 남편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이미 이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찾김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는 했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A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또한 귀하의 남편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Q 문 14 | 저는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상대방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저와는 이미 이혼이 된 것이라며 생활비도 끊고 집도 처분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혼을 당하는지요?

A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므231 판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은 집을 나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 허위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의 법적 효력

Q 문 15 | 남편이 하던 사업이 부도났다고 하여 의논 끝에 집을 제 앞으로 돌리기로 하고 형식적으로만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한 지 6개월 뒤 남편은 가출하여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가장이혼의 무효가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있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그 추정은 합리적이며 강력한 반증으로써만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 이혼무효를 주장하려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입증 방법을 제대로 갖추어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장사는 잘되지 않고 빚은 점점 늘어나 힘들어 하시더니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상당하여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친척들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락이 가능한 아버지의 4촌 이내의 친척들에게 모두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의 채권자가 제 자녀를 상대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 인터넷에 찾아보니 직계비속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빚이 손자에게까지 상속되는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10살인 제 아들이 친정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A ① 법정상속인의 1순위는 직계비속이며,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채무에 대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가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손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손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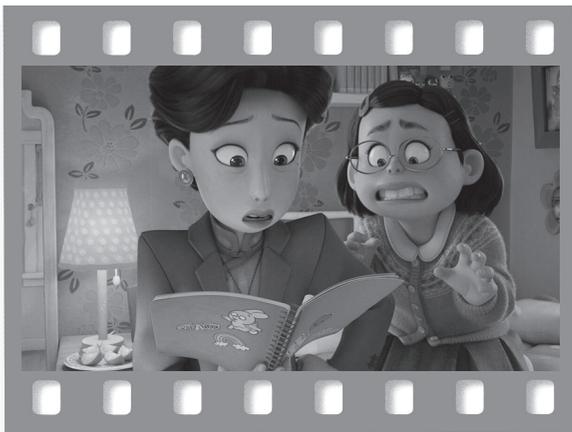
따라서 귀하는 부친의 채무가 귀하의 자녀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권지연 상담위원

메이의 새빨간 비밀

감독 도미시

목소리 출연 로절린 치앙, 산드라 오



중국계 캐나다인인 13살 소녀 메이린(로절린 치앙)은 완벽한 모범생이다. 학교에서는 훌륭한 학생이고, 하교한 뒤에는 가업인 사원을 돌보는 일도 빈틈없이 해낸다. 친구 미리엄과 애비, 프리야와 함께 보이 그룹 포타운에 열광하는 모습만큼은 평범한 또래 아이지만, 엄마 밉(산드라 오)은 ‘우리 딸’이 그런 이상한 남자애들한테 빠지지 않는 건실한 아이라고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꿈에 시달리다 깬 메이린은 거울 속에서 거대한 레서 판다(너구리 판다)로 바뀐 자신을 마주한다. 기절할 만큼 충격을 받은 메이린에게 엄마는 가문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사원에 모시고 있던 조상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대대로 딸들에게 유전된 특징이 있었으니,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면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레서 판다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이다.

지금껏 픽사 애니메이션(〈토이 스토리〉 시리즈라든가 〈업〉, 〈인사이드 아웃〉, 〈소울〉 등)이 현실과 판타지의 지극히 이상적인 배합을 구현하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는 굳건한 제국이 익숙한 ‘동화’의 재창조에 힘을 기울이던 것에 신선한 현대성을 불어넣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그중에서도 상당히 이색적인 위치를 점하는 작품이다.

먼저 이 작품은 주인공 메이린과 그 친구들을 통해 구현되는 ‘소녀다움’의 다른 층위를 보여준다. 메이린은 토론토의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중국계 캐나다인이고, 다른 세 친구들도 유색 인종이거나 안경을 쓰거나 교정기를 껴거나 보통 미디어에서 추구하는 ‘날씬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체격이며, 그 사실이 이들에게 전혀 콤플렉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 또래 학우들이 다소 경원시할 만한 뛰어난 학업성취도와 적극성과 완벽주의를 거리낌 없이(‘잘난 척하며’) 과시하는 종류의 소녀들은 보통 픽션에서 조연이거나 악역으로 등장했던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그런 소녀들을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지 않은 채, 로우틴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잘 살리며 이들의 ‘평범함’을 긍정한다. 미디어에서 롤모델을 찾는 것만큼이나 ‘나와 닮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공주거나 혹은 공주에 준하는 특별한 위치와 재능(과 미모)을 타고난 주인공들을 바라보기만 하던 유색 인종 아이

들에게, 이 픽사 애니메이션이 안겨주는 친숙한 얼굴과 몸짓은 어마어마한 안도감과 해방감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아시아권 아이들에게 메이린이 경험하는 가족 간 갈등은 너무나 익숙한 주제다. 메이린은 “난 엄마의 꿈과 희망이야”라든가 “엄마의 자랑이자 기쁨답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다짐처럼 되뇌는다. 메이린의 가정은 조상님을 모신 가족 사당을 방문하는 이들이 내는 관광 수입으로 꾸려진다. 그런 환경 속에서 메이린은 고집스러운 전통 수호와 개방적인 캐나다인으로서의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해내기를 당연한 듯 요구받는다. 그러면서 엄마는 메이린이 ‘평범한’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다르다고 굳게 믿는다. 보이 그룹 포타운을 좋아한다거나 또래 소년들에게 이성적 흥미를 느끼는 마음을 일언지하에 깎아내리고, ‘너에게 어울리는 수준’을 갖춘 친구들을 사귀라고 잔소리한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요구받는 딸들은 어머니의 기대와 희생에 제대로 맞춘 섬세한 감정 노동과 함께, 어떤 종류의 막 나가는 모험 같은 건 꿈도 꾸면 안 되는 사랑스러운 인형 같은 취급에도 조심스럽게 순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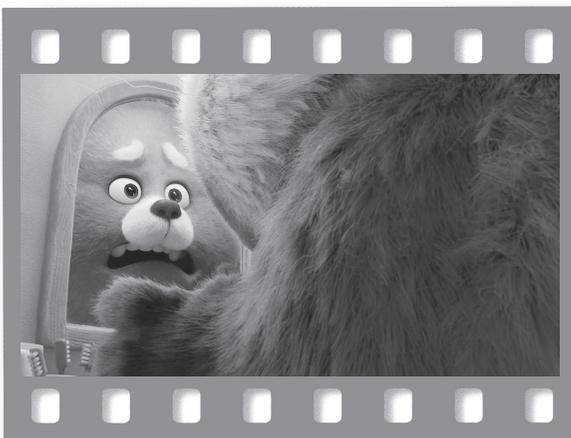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비틀리고 벗어나기 시작하는 딸과 엄마의 사이에 대해 뭐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까. ‘너는 나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와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은 같지 않다. 어느 순간에는 딸이 자신의 복제품이거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엄마의 삶을 지금 당장의 잣대로만 판단하거나 딸을 향한 엄마의 환상을 유지하도록 기꺼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걸 멈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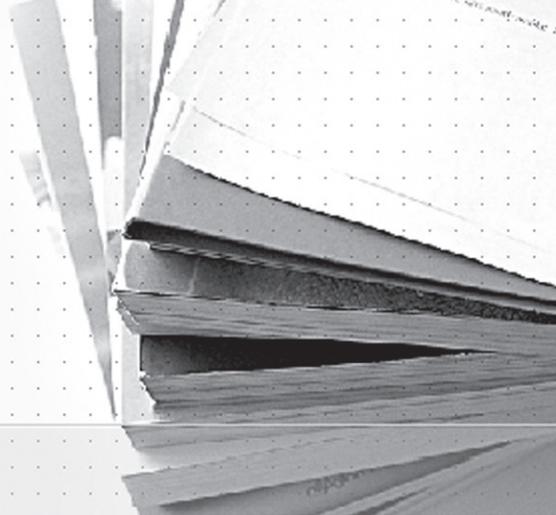
한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 사이에 얽혀 있는 진득한 일체감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의 결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순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완벽한 딸 노릇 지켜. 난 절대로 엄마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고, 평생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어찌면 당신의 엄마도 그런 ‘딸’이었다.

〈메이의 새빨간 비밀〉은 현재 디즈니 플러스(월트디즈니 컴퍼니의 가입형 온라인 스트리밍 OTT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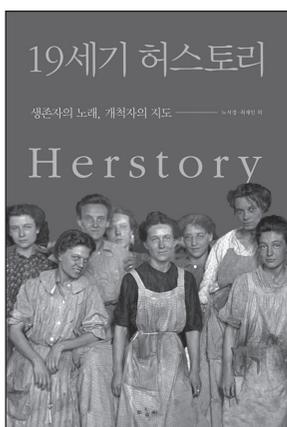


19세기 허스토리

생존자의 노래, 개척자의 지도

노서경 · 최재인 외

마농지, 2022



훗날, 2022년 한국의 여성사는 어떻게 이야기될 것인가, 궁금하다.

'20대 남자들이 일자기도 없고, 이중잣대로 여자들이 편의대로 자기 살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 젊은 남성들이 분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향후 5년간의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말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2022년 4월 1일 아침 신문이다. 무슨 만우절 농담도 아니고, 무려 다음 정부 관계자께서.

1793년 10월,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혁명적이었던 자코뱅 정부는 여성의 집회와 정치 클럽을 불법화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이 정치적 결사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다른 이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타고났다. 여성에게는 자신을 희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쓴 올랭드 구주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혁명에서조차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지 않았고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20세기 이후이다. 21세기 한국 사회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저런 발언을 보니 최근 읽은 따끈한 새 책, 『19세기 허스토리』가 새삼스럽다.

서문의 제목 "인간과 시민"으로 살아남기 위한 분투 : 어느 19세기 서구 여성의 역사"가 책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제국주의, 산업화, 혁명의 시기를 거치며 요동친 서구의 19세기에 여성이 '당사자'로서 상황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역사를 보여준다. 당대의 여성들은 시대의 한계에 갇혀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한 편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역사의 주체였다. 이 책은 실재했으나 잊히고 지워진 그 궤적을 조명하면서 서양사 연구자 여섯 명이 함께 19세기가 서구 여성에게 어떤 시대였는지, 19세기

여성의 역사적 경험은 무엇인지를 시대의 초상이라 할 인물과 집단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아이티 혁명기에 싸우고 연대하며 자유를 혁신해 간 유색인 여성들, 미국 첫 세대 공장노동자인 로웰 여공들, 생시몽주의의 이상과 노동자 공동생산조합에 헌신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폴린 롤랑, 파리로온을 이끈 혁명가 루이즈 미셀, 미국에서 여성참정권을 처음 주장한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 독일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교육과 고용 평등을 내세운 루이제 오토, 빅토리아 시대의 젠더 규범을 수용하는 동시에 전복한 영국 작가 세라 콜리지 등. 이들이 인간과 시민으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한 '19세기 허스토리'가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이야기 한다.

UNDP 즉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 GII는 세계 162개국 가운데 11위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내놓은 국가 내의 성격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53개국 가운데 102위이다. 성평등지수에는 청소년 출산율과 산모 사망율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 전체의 경제순위나 과학발전의 정도가 대체로 반영되기 때문이고 성격차지수는 국가 내 여성과 남성의 격차이기 때문에 잦은 내전으로 많은 남성들이 참전 중인 르완다의 경우 여성들의 정치, 경제 참여율이 우리보다 높다고 한다. 그리고 이 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유리천장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12계단이나 낮은 29위에 머무르고 있다. 어떤 통계의 어떤 분석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가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라 개인적 차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분단된 나라에서 지역을 차별하고, 계급갈등을 조장하고, 성별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 시대에 그저 우리는 평등한 참정권에나 감사해야 하는 걸까. 21세기에.

이숙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동계방학을 맞아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김진호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오기 전에는, 간단한 사무보조 정도만 진행하면서 어깨너머 업무를 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상담 연수, 가사법률 관련 법률안 스크랩 등 도서실 연수, 소송구조를 위한 본인 진술서 작성을 연수하며 매우 실무적인 부분들을 직접 실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며, 가사 관련 법률들의 체계에 대해 스스로 정립이 되었고, 더욱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자주 다루었던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친권과 양육권 다툼, 상속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의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례는 당사자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고,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도움이 되고 싶기에 이전의 판례들과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면서, 사회의 집단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정에서 불안과 걱정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가까워야 할 가정에서 서로 소송이 오가는 것은 정말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이라면, 그분들의 불안하고 힘든 가정에 도움을 드려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가정의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변호사가 되어 가정 법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에는 더욱 많은 이들을 돕고 싶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봉사하는 백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정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 달 동안의 실습이 끝나며 우선 실습의 경험을 얻게 됨에 감사하고 부족하고 서툴렀던 저를 이끌어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3학년을 마친 뒤 진로에 대해 생각하면서 법조인으로서 자질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을 하였던 학우들의 후기를 보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실습을 돌이켜보면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성취감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가족법 법률을 ‘어떻게 할까요’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료 대서 업무 지원을 통해 직접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 상담 연수를 통해 실제 내담자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법률구조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직접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내담자에게 가족법 법률을 적용하여 법률구조를 하는 선생님들 모습을 보며 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수탁 기관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하기 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저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소를 소개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에 노력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구조 사업, 교육 사업의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며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채 리

동국대학교 법학과

이번 겨울방학에 현장실습을 신청하게 된 건 내가 배운 법적 지식을 직접 실무에서 활용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대단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계신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고 내담자분들에게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자고 다짐했다. 그렇기에 실습기간 4주 동안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민원상담 매뉴얼’이나 ‘슬기로운 비혼 생활’ 등 상담소에 비치된 각종 책자를 톱툰이 읽어보며 공부했다. 전화 상담 연수 시에는 상담 사례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했고, 모르는 건 선생님께 여쭙봤다. 언제나 친절하고 쉽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쌓였고, 나중에는 전화로 간단한 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상담소를 찾아주신 대다수의 내담자는 법을 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법적 절차 진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셨다. 이러한 이유로 전화 문의를 하셨던 분이나 법원 참관했을 시 상담소로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신 분 중에서 실제로 상담소로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다. 이분들의 소송구조 신청을 위한 본인 진술서 작성과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등의 재판 관련 서류 작성 연수를 하며 조금이나마 내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를 계기로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법조인이 되어야 할지 진심으로 고민해보게 되었다.

상담 참관과 법원 참관, 전화 상담 연수 업무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생생하게 접하면서 온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고, 우리나라 가정법률에 대한 실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좋았다. 이렇게 소중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국대학교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장 은 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임을 알고,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연수하면서 어떤 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시는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진술서나 서류를 기록하는 방법을 배워보며 실무경험을 해보고 싶어 연수 신청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전화 상담 연수, 상담 참관 등을 하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이혼, 가족갈등, 양육비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공부할 수 있었다. 무료 대서한 파일을 살펴보고 또 직접 작성해보며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현관 업무와 전화 상담 연수를 통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엑셀 작성 방법과 업무를 하는 방법도 배웠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고, 그런 업무를 실습하면서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간절할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분들에게 상담소와 같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해당한다면 소송구조까지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습하며 배운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은 앞으로 취업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변에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상담소에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유용한 실습이었다고 생각한다.

김령경

동국대학교 법학과

지금까지 법학과 학부생으로 법을 공부했지만, 이는 이론적인 부분이었기에 실제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많은 판례를 읽어보았지만, 암기하기 바빠 그 판례가 나오기까지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저 시험만을 위해 끝없이 암기만 반복하는 상황에 지쳐있었습니다. 암기도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머릿속에 정립되지 않은 수많은 법을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실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며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현장실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법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전화 상담 연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법을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고, '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집을 통해 주요 가사사건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사례집의 목차를 머릿속에 두고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그에 해당하는 상담사례를 찾아 읽으며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내 한국가정법률상담 출장상담실에서의 상담 참관 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생모가 달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상담실을 방문한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친자 관련 소송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과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적격에 대해 배우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려 노력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상담 참관뿐만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내부에 비치된 여러 소송과 심판 관련 신청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종선고 취소 심판 청구서 작성을 직접 도와드리며 상담사례집에서 보았던 사례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프로그램 참여하여 기록 정리 업무, 가사 사건 관련 판결과 법률안 스크랩, 파산면책 진술서 작성, 현장에서 내담자 안내 등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

니다. 특히, 전화 상담 연수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며 느꼈던 성취감과 책임감 등 현장실습을 통해 한 모든 것들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가족법을 모두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 비해 배우고 느낀 것이 많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을 상담소와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법학 공부와 진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이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2021년 6월 한 달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혼 절차에 관한 전화 상담 안내를 할 때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곤란함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 경험은 2021-2학기에 가족법 수업을 수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법 수업을 통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속 순위 등 다양한 가사와 관련된 법적 개념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습득한 개념을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지난 상담소 봉사에서는 이혼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내담자분들께 안내해 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현장실습을 오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전화 상담 연수, 사이버상담 연수, 소송구조신청을 위한 본인 진술서 작성,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 사건에서의 상속재산목록과 보정서 작성, 가정폭력 설문 조사지 작성 안내, 가족관계등록예규 정리,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 상담 참관, 상속 관련 상담 참관 등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실습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원 및 검찰의 보호처분으로 상담명령을 받고 상담을 하기 전, 작성해야 하는 가정폭력 설문 조사지의 작성을 도와준 경험이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

자께 설문 조사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던 당시 상황', '주 갈등 원인', '앞으로의 계획(이혼 희망 여부 등)' 등을 여쭙보니 폭력 행사 여부에 있어 행위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달랐고, 이혼 사유에서도 피해자는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피해자에게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으리라 지레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건의 상담을 참관해보니 행위자가 폭력을 행한 사실은 맞으나, 피해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담 참관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선입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갈등 상황에 있어 일방의 말만 듣고, 속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실습 기간 4주 동안 여러 법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어 법학도로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이버상담실 상담 연수를 통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화 상담 연수를 통해 다양한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 과거 양육비청구 방법 등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책으로만 배운 법률 지식이 실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적용도 해볼 기회를 가져 법학도로서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소의 선생님들과 실습생 동기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승 영

동국대학교 법학과

'인류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하신 이태영 선생님께서 창립기념사 때 하신 말씀이 상담소 6층 복도에 걸려있는 글귀입니다. 실습을 위해 상담소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해당 글귀를 보며 우리 사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가정법

률상담소의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덩달아 제가 실습활동을 함에 있어 그 의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법학을 배우는 학생이었기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현장 실습에 지원할 당시만 해도 실습을 통해 단순히 민법, 특히 가족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법률구조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기대가 컸습니다. 물론 실습 과정을 통하여 가족법과 다양한 가사사건을 접할 수 있었고 법률구조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습을 통하여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은 내담자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전화 상담 연수를 통하여 많은 내담자분들을 응대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정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분들께서는 이혼, 친권·양육, 가정폭력 등 각기 다른 사정으로 상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었다면 그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습생에게 있어 전화주신 내담자는 많은 내담자 중 한 명일지 몰라도, 그분들이 상담소로 전화주시기까지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화 상담 연수와 사이버상담 연수에 임하면서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전히 가정폭력을 비롯한 가사에 관한 사건들로 사회가 떠들썩한 것을 보면, 상담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태영 선생님께서 계시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였지만, 이내 그 불편함은 또 다른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사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매일같이 힘쓰는 상담소에서의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

실습기간 한 달간 상담소의 많은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보람되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조언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실습활동을 진행하며 힘이 되어 주었던 다른 실습생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담소에서의 소

중한 경험을 가슴에 품고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유 빈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정 채 연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조인이 되고자 법학과에 진학하였고 지난 3년간 진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하였습니다. 4학년을 앞둔 지금, 설계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다져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껴 현장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신청하였습니다. 형법, 행정법 등 공법에 주로 초점을 맞춰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 민법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특히나 가족법 강의는 듣지 않은 상태라서 가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의 실습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하면서, 강의를 통한 배움보다 직접 현실적인 사안을 마주하여 얻는 배움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익힌 학문이 타인을 위해 쓰인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됐습니다. 실습을 통해 가족법에 대해 공부하고 학업적으로 성장한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그보다 값진 것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게 된 점이었습니다. 본 기관에서 전화상담연수와 법률구조 실습, 상담 참관, 상담소 일반업무 연수 등을 통해 다양한 사안으로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던 각종 가사 문제들을 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일이 어려우면서도 가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어떤 경험보다도 값지고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될 한 달이였습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을 통해 어떠한 자세로 무사히 한 달간의 실습을 마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실습한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 연수 활동을 오기 전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경험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생활에서 나타난 여러 사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 연수 활동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 중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선생님의 노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달여간 상담 참관, 법률구조 연수, 전화 상담 연수, 사이버상담 연수 등을 통해 가정폭력, 양육비지급문제, 이혼 등 실제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상담연수에서 다양한 가정 내 문제가 매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주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감명 깊었습니다. 또한, 도서 실업무를 하면서 월간 가정상담지의 가정상담 기사에서 상담소 소식과 소송구조를 색인했던 경험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월간 소식을 보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을 통해 다양한 법률구조사례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연수는 기대한 만큼 다양한 이론과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 동안의 연수 활동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는 앞으로 저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 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법학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실습을 앞두고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실습 첫째 날 월요일 회의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 7층 계단을 올라가면서까지도, 8주간의 실습을 잘 마칠 수 있을까라

고 생각하며 걱정했는데 어느새 실습 일정도 막바지에 다 다라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무색하게 상담소 선생님들과 실습 동기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습 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업무 중 전화 상담 연수를 통해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실습을 왔을 때 기본적인 법률용어 자체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전화 상담 연수 초반에는 전화를 받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발행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집 등과 같은 단행본과 자료, 교원직무연수를 통하여 가족법에 관한 내용을 하나씩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담실 연수 시 답변을 작성하면서 알게 된 법적 절차나 준비서류 등을 포함한 법률 지식이 전화상담연수에 많은 도움이 되어, 점차 전화 상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담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가정폭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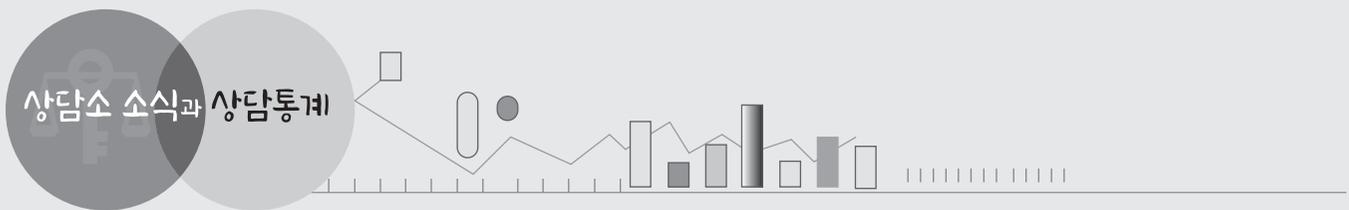
겪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초반에는 이혼소송의 절차에 관해 묻는 보통의 전화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에겐 간소화된 이혼 절차가 필요하다고 울분을 토하며 거듭 주장하시는 내담자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담자분이 원하셨던 것은 공감과 위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법률상담은 정보제공과 더불어 공감과 위로가 함께 함을 알았으며, 전화상담 연수 시에 내담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조인의 진로를 막연하게 꿈꿔왔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생으로 보낸 2달 동안 진로를 구체화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서 가족법을 포함한 법학 과목들을 수강하며 부족한 법학 지식을 채우고, 훗날 법조인이 되어 '법률구조를 위한 백인변호사단'에 참여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만나세요~~



- 상담대표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e-mail webmaster@lawhome.or.kr
-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
-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egalaidcenter/>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2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24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지난 2월 24일 정기 전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신입 이사 및 감사 유임에 대한 인준도 이루어졌다.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번 총회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모든 참석자들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관련사진 2면)

2022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법교육

본소의 2022년 상반기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봉사자 대상 교육이 2022년 3월 10일에 진행되었다. 이 교육은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 법 교육을 내용으로 하며,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20명의 대학생 지원자들이 참여하였고 조은경, 박상진, 천다라 상담위원이 강의하였다.

본소의 자원봉사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생들이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평등 및 가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본소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의 소외계층이 겪는 법과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관련사진 2면)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3월 17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너의 의미'를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김병후 원장은 나의 가치는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므로 소중한 사람인 '너'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모두 30명이 참석하였고, 이 강의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이루어지며 다음 강의는 4월 2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본소 변호사 회의

3월 30일 본소에서는 본소 소속 변호사와 상담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소 내부 소송구조사건을 점검하는 변호사 회의가 열렸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

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3. 8. 이혼전후상담 상담사역량강화교육

: 강서구가족센터
- 최수진 상담위원

3.16.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전규선 상담위원

3.23. 외국인위기임산부자의임신출산관련정책 및

지원체계마련을위한토론회
- 조은경 상담위원

2022년 3월 상담통계

총 건수 5,286				
법률상담 (4,660)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794	3,731	133	1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31		26		69

• 인터넷 정보 이용 76,686 건

2022년 3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된 총 상담건수는 5,286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66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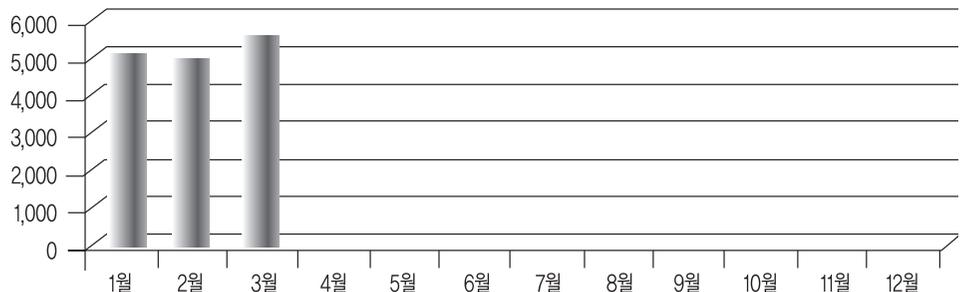
(88.2%), 화해조정 531건(10.0%), 소장 등 서류작성 26건(0.5%), 소송구조 69건(1.3%)이었다.

법률상담 4,66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2년 2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3%→0.4%), 양육비(7.2%→7.5%), 인지(1.1%→1.3%), 친생부인(0.6%→1.0%), 친생자존부(3.2%→3.3%), 입양(0.9%→1.0%), 유언·상속(6.7%→7.6%), 개명(0.3%→1.0%), 성변경(0.7%→1.0%), 파양(0.2%→0.3%), 성년후견(2.1%→3.0%), 가사기타

(11.8%→13.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0.1%→0.2%), 채권·채무(0.4%→0.5%),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66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794건(17.0%), 전화상담 3,731건(80.1%), 인터넷상담 133건(2.9%), 서신상담 1건(0.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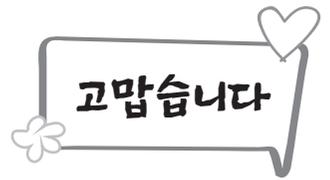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3월 15일과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회의에 참석하였고, 16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재부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대면심사에 김현옥 재무회계과장과 함께 참석하였다. 2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가족법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23일에는 사법연수원에서 오프라인과 원격연수 병행으로 진행한 2022년도 가정보호·아동보호 재판실무 법관연수에서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25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zoom활용 온라인 방식)에 참석하였다. 30일과 31일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각 경찰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처벌법과 주요 판례”를 주제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를 하였다.



2022년 3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학생 자원봉사

김가령, 김나영, 김도연, 김민주, 김상은, 김승현, 김연주, 김영지, 김 원, 김지민, 김지현, 김태은,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문송지, 문연수, 민지용, 박도윤, 박선우, 박세현, 박아영, 박태희, 배호진, 봉수빈, 송은하, 신새미, 신수민, 오수민, 이서현, 이세진, 이수민, 이수정, 이승준, 이예원, 임서윤, 장보민, 장아현, 장윤아, 장지수, 전준혁, 정유나,정은영, 정지현, 정희재, 조예원, 최서연, 최세은, 한기연 님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김수연, 유혜리, 박슬기 님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최은아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김경준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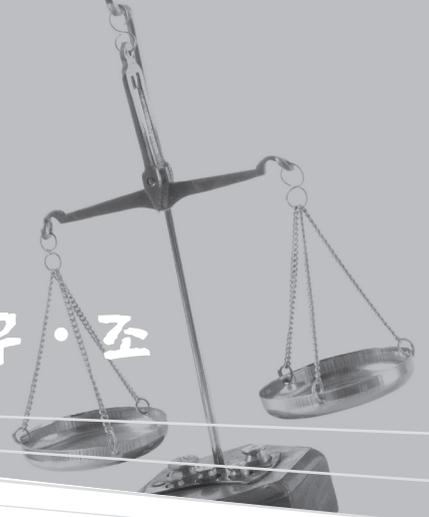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양육자의 건강 악화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변경 판결

법률구조 2020-243, 2021-1-105

담당 : 김경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40대)과 상대방(남, 40대)은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1년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상대방이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기일에 번복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의 폭력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서둘러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4년 12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2014년 12월 말부터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지만 적은 월급과 양육비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 상담소 소송구조를 통해 양육비 변경 조정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2016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월 30만 원씩을,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3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직하게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양육비 35만 원으로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어려워져서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

를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2. 17.)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 3.부터 2024. 2.까지는 월 450,000원씩을, 2024. 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3.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4.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였던 모에 대한 과거양육비 결정

법률구조 2021-1-237

담당 : 심재범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심판청구

내용 : 청구인(남, 40대)과 상대방(여, 40대)은 2001년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06년 3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였고 전세자금 등도 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4월경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시작했다.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2020년경 청구인은 상대방

에게 친권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동의하였다. 하지만 친권 변경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양육비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반발하였고, 친권 변경도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였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다. 현재 사건본인은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더 나은 장래와 배움을 위해 양육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2. 15.)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8,000,000원을 이 결정 확정일부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만약 지급을 지체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국내에 입국하지 못해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중국 국적 아내에 대한 이혼판결**

법률구조 2021-1-386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0대)와 중국 국적의 피고(여, 60대)는 2004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지인을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고, 연락마저 두절되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원고는 최근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서류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거부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2.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필리핀인 아내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여
장기별거에 이른 한국인 남편과의 이혼조정**

법률구조 2021-1-352

담당 : 김태중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대)와 피고(남, 60대)는 2000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인 자녀와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필리핀 국적자였으나 2005년경 귀화하였다. 당시 필리핀 국적이던 원고는 혼인 후 시가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였지만 차별대우를 받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오해가 쌓였다. 2001년경 갑자기 시누이가 당시 임신 중이던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땅으로 밀치면서 원고에게 떠나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원고를 도와주지 않았다. 2005년경 원고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시댁 쪽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가끔 방문하였다. 2006년경 피고는 자녀들을 잠시 피고의 주소지로 데려가겠다고 하더니 그 후 15년간 연락이 두절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부에 대하여
인지 및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21-1-445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인지청구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비혼의 관계로 사건본인들의 친생부모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1월경

부터 2018년 3월경까지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생활비 지급을 자주 중단하였고 폭력과 욕설로 위협하는 일이 많아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사전에 합의 없이 막 무가내로 사건본인들을 보러 와 매번 다툼이 발생하였다. 헤어질 당시 피고는 사건본인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부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원고와의 연락마저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피고는 사건본인1을 인지하지 않아 사건본인1의 법적 친생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1의 인지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2. 1. 24.)

1. 피고는 사건본인1을 친생자로 인지한다.
2.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1에 대한 양육비로 월 65만 원, 사건본인2에 대한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전남편의 혼인외자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통해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21-1-456

담당 : 윤길현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원고(여, 70대)와 피고(남, 30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 관계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1972년경 전남편과 혼인하였으나 1976년경 별거를 시작하여 1985년경 이혼하였다. 전남편은 별거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를 원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였다. 2014년경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비로소

피고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의 친모와 연락을 하고 유전자검사까지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제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부산가정법원 2022. 2. 15.)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오래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아내와의 이혼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1-1-507

담당 : 김학모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0대)와 피고(여, 40대)는 1993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20대의 성인 자녀들을 두고 있다. 2006년 경 피고는 원고와 말다툼을 한 후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가출하였다. 원고는 자녀들을 키우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09년경 자녀들을 보호시설에 맡겼다. 고등학생 때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겪었던 원고는 화상후유증으로 평생 고통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신청을 하고자 하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2. 2.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5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4월 11일, 4월 25일, 5월 9일, 5월 23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4월 28일	분노는 과학이다.
5월 26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선행 조건인 자율성
6월 23일	관계에서의 상처
7월 28일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인가?
8월 25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2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7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진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사
4월 14일	분노의 관리2, 화내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5월 12일	분노의 이익, 화를 잘 내면 원하는 걸 얻어요	
6월 9일	분노의 결과, 화내지 않기 위해 화를 내는 거예요	
7월 14일	시간을 넘어서 고통을 지속시키는 트라우마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월 8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10월 13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8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가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2년 5월 / 7월 / 9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2-3601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 행복캠프

일시 ▶
2022년 5월 / 7월 / 9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스테이션, 청렴한 이번 정류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